의 안 번 호	<u>ই</u>	제	ই
의 경	결	20 .	
연월 약	실	(제	회)

의 결 사 항

지 역 신 용 보 증 재 단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1년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법률 제20710호, 2025. 1. 21. 공포, 2025. 4. 22.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 정비(안 제5조의2)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용어를 정비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지역신 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의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대통령령 제 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게 정 안	
제5조의2(대출금의 범위) ① 법	제5조의2(대출금의 범위)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하 "은행등"이라 한다)의 법 제		
7조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으로 한		
다.	.	
1. <u>대차대조표</u> 의 계정과목 중	1. <u>재무상태표</u>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대출금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	3	
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		
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		
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		
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		
조,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제		
출하는 <u>대차대조표</u> 및 그 계정	<u>재무상태표</u>	
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6, 「새마을금고법」 제33조,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산림조합법」 제54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4
재무상태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연 락 처

(044) 204 - 7528